

의안번호	제 33 호
의 결 연 월 일	2010년 9월 일 (제 294 회)

세종시정상추진및발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

제 출 자	의회운영위원장
제출연월일	2010년 9월 일

세종시정상추진및발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

의안 번호	33
----------	----

제안연월일 : 2010. 9. .

제 안 자 : 의회운영위원장

1. 주 문

- 「지방자치법」 제56조, 「동법시행령」 제56조, 「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」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“세종시정상추진및발전특별위원회”를 구성한다.
- 활동기간 : 2010년 9월 16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.
- 위 원 수 : 7명 이내로 한다.

2. 제안이유

- 행정안전부가 「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·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」 제16조 제5항에 의거 ‘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’이 변경 고시(제2010-52호, 2010. 8. 20.)되어 세종시 건설이 추진됨에 따라,
- 세종시 건설에 도내 건설업체의 참여와 우리 도 배후지역의 발전 전략 등을 모색하고,
- 의회 차원에서 세종시 건설의 정상추진을 위한 개선·보완방안 제시와 관련된 법령의 제정 및 개정을 촉구하고자 함.

3. 참고사항 : 관련법규

- 「지방자치법」 제56조 및 「동법시행령」 제56조
- 「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」 제7조 및 제9조

관련법규 발췌

【 지방자치법 】

제56조(위원회의 설치) ② 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·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·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.

【 지방자치법 시행령 】

제56조(특별위원회의 설치) ① 특별위원회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그 활동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그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③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.

【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】

제7조(특별위원회) 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.

③ 의원의 자격심사, 윤리심사,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.

④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. 다만, 그 사안에 대한 심사대상이 수시로 발생하여 의장이

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그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다.

제9조(위원의 선출과 개선(改選)) ① 상임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출한다.

② 특별위원회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출한다.